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98 호】

2014년 08월 08일 (금)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2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112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6호:백석2동 주민센터)사업 공사완료 공고 14

고양시 공고
제2014-11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3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15

고양시 공고
제2014-1133호

고양시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 16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8월 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재정비하여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 2 신설)
 - 나.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4년 8월 28일 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 복지정책과

- 주 소 : (우)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전 화 : 031)8075-3246

- F A X : 031)8075-49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승인신청 등)”을 “(시설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복지회관”을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평가)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평가는 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별지 제6호서식)

2. 시설사용 승인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직인인영부(별지 제8호서식)
4.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5. 수입내역부(별지 제10호서식)
6. 지급내역부(별지 제11호서식)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세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 중인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과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성 명	복지정책과장 이 명 옥
	팀 성 명	복지시설팀장 전 종 학
	담당자 성명·전화	권 재 원 (8075-3246)

일 일 결 산 일 지

○ 결 산 20 . . .

수 입				지 출				비 고
적 요	수 량	금 액	누 계	적 요	수 량	금 액	누 계	

○ 운영실적

건 명	운영현황	특이사항	비 고
	○ 인 원 : / ○ 실 적 : / ○ 주요내용		

시 설 사 용 승 인 대 장

일련 번호	사용승인 일자	사용시설명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자		사용료	비 고
					주 소	성 명		

직 인 인 영 부

공인명	인 영	공인명	인 영

【별지 제9호 서식】

현금출납부

(단위 : 천원)

년 월 일	과 목	적 요	채 주	수입액	지급액	잔 액

〈기재요령〉 반환은 주서로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수입내역부

(단위: 천원)

년 월 일	과 목	적 요	산출기초	수입액	총 액	비 고

〈기재요령〉 반환은 주서로 기재

지 급 내 역 부

(과목)

(단위: 천

원)

월 일	적 요	채 주	결 정 예산액 (1)	지급원인 행 위 액 (2)	배부예산 잔 액 (1 - 2)	수 령 액 (3)	지 급 액 (4)	자금잔액 (3 - 4)

〈기재요령〉 지급원인 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 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제2조(승인신청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제2조(시설사용) ① 「고양시 동 중 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 라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 관”이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면제) ① 사용료를 면 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주 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면제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구·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 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2. 시·구·동에서 주최하는 문화, 예술의 행사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 항) 4. 비영리 목적인 경로당, 탁아소 등 이에 준하는 경우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4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회관 운영권자는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일결산 일지 2. 비품(시설)대장 3. 도서대장 4. 시설사용승인대장 5. 직인인영부 6. 현금출납부 7. 수입내역부 8. 지급내역부 9.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p><u><신 설></u></p>	<p><u>제3조의2(평가) 조례 제15조제2항에</u> <u>서 정한 평가는 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4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일결산 일지(별지 제6호서식) 2. 시설사용승인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직인인영부(별지 제8호 서식) 4.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5. 수입내역부(별지 제10호 서식) 6. 지급내역부(별지 제11호 서식)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p><u>제5조(세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u></p>

고양시 공고 제2014-112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6호:백석2동 주민센터)사업 공사완료 공고

우리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시행한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백석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6호:백석2동 주민센터)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8일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백석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6호:백석2동 주민센터)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연면적(m ²)	비 고
신 축	백석2동 주민센터	일산동구 장백로 72(백석동) (백석동 1339번지)	746.3	2,780.4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성명 : 고양시장(회계과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4. 02. 18.

고양시 공고 제2014-11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3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우리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시행한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31(식사동 1531번지)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3호)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8일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31(식사동 153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3호)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비 고
신 축	주차장93호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31 (식사동 1531번지)	2,238.0	13,570,436	지하1층 지상8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삼성금융플라자 20층
- 성명 : 국제자산신탁(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3. 06. 05
- 준공예정일 : 2014. 07. 18.

고양시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4조에 의거, 시민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 8. 8.

고 양 시 장 (인)

1. 모집 대상 : 고양시 시민감사관
2. 모집 인원 : 20명내(전문분야 10~15명, 일반분야 5명)
3. 모집 분야(2개 분야)

구 분	모 집 대 상
전문 분야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일반 분야	그 외 분야

4. 신청 자격 : 고양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제한 없음

5. 시민감사관의 주요 임무

-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신고
-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 지역주민의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
-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6. 접수 일정 및 발표

- 공고(접수) 기간 : 2014. 8. 8. ~ 2014. 8. 22.(15일간)
- 발 표 : 선정자에 한하여 고양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2014. 8. 22.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접수 방법

- 방 문 : 고양시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시청 본관 3층)
- 우 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고양시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 FAX : 031-8075-4905(팩스 송부 후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E-mail : phil0407@korea.kr(메일 송부 후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8. 제출 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이력서(제출 희망자에 한함) 각 1부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함(1회 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별첨)를 참조하시거나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031-8075-213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지원 신청서

성명	한글		분야	☐ 전문(분야) ☐ 일반
	한자		전문분야 경 력	총 년 개월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확인용)	-		나이	만 세
주 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졸업(전공:)			
주요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직업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해당자)			
E-mail				
<p>고양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고 양 시 장 귀하</p>				
<p>• 주 소 : 실제거주지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통·반 및 아파트 동·호수 까지 기재</p> <p>• 직 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직위 등 상세히 기재</p> <p>• 자 격 증 : 건축·토목·도시계획·환경 등 전공분야 및 직업관련 보유 자격증 기재</p> <p>• 주요경력 : 최근까지 역임했던 각종 경력을 기재</p> <p>※ 위의 개인정보는 시민감사관 관리이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p>				

자 기 소 개 서

<p>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p>	<p>※ 별지 사용 가능(A4:3매 이내, 이력서 소정양식 사용 권장)</p>
<p>② 시민감사관 응모동기, 포부 및 계획</p>	<p>※ 별지 사용 가능</p>
<p>③ 기타 고양시정 운영에 바라고 싶은 점</p>	

※ - 소개서 작성은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시민감사관 응모동기, 포부 및 계획, 시정제안 등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필요시 작성 (의무사항 아님)

[illegible]